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현안사업, 당초 미부담사업 및 주민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9,17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84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084백만원이 증액된 602,166백만원, 특별회계는 10,762백만원이 증액되어 107,004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2,526백만원, 지방교부세 29,340백만원, 조정교부금등 2,37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662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17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64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97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79,567백만원, 재무활동 9,175백만원, 행정운영 경비 340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0,689백만원, 재무활동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1백만원임.

Ⅲ. 예산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9,17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9%인 99,846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602,166백만원으로 89,084백만원(17.36%)이 증액
- 특별회계는 107,004백만원으로 10,762백만원(11.18%)이 증액
편성되었음.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709,171	100.00	609,324	99,846	16.39
일	반 회 계	601,166	84.91	513,082	89,084	17.36
특	별 회 계	107,004	15.09	96,242	10,762	11.18
	공기업특별회계	25,381	3.58	19,777	5,604	28.3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381	3.58	19,777	5,604	28.34
	기타특별회계	81,623	11.51	76,464	5,158	6.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5	0.08	544	10	2.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41	0.02	141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1,192	0.17	1,003	188	18.77
	수질개선특별회계	79,733	11.24	74,775	4,958	6.63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17.36%인 89,084백만원이 증액된 602,166백만원임.

○ 자체수입은 62,781백만원으로

- 지방세는 41,95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세외수입은 2,52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증감내역(세외수입)

-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500백만원 / 기정대비 2,000백만원 증액
-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 1,500백만원 / 기정대비 500백만원 증액
- ▶ 서울사무소 임차 보증금 반환 20백만원 / 순증

○ 이전수입은 493,078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29,34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내역(지방교부세)

- ▶ 2024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교부(내시)된 보통교부세분 22,724백만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 ▶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대관령208호선) 1,300백만원 순증(특별교부세)
- ▶ 부동산교부세 11,616백만원 / 기정대비 3,616백만원 증액
- ▶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600백만원 순증(지방소멸대응기금)

- 조정교부금등은 2,37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조정교부금)

- ▶ 2024년도 본 예산 편성이 후 교부(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1,577백만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 ▶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550백만원 순증(특별조정교부금)
- ▶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 250백만원 순증(특별조정교부금)

- 보조금은 15,66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증감내역 (국·도비 보조금)

- ▶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10,724백만원 증가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2,435백만원,
 -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3,028백만원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200백만원 등 교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반영 및 조정
- ▶ 시·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4,937백만원 증가
 -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1,500백만원,
 - 재해위험지역정비(대미지구) 511백만원 등 교부내역 조정 반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306백만원으로 39,17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증감내역 (지방교부세)

- ▶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39,178백만원 증액하여 계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02,166	100.00	513,082	89,084	17.36	
자 채 수 입	소 계	62,781	10.43	60,254	2,526	4.19
	지방세수입	41,959	6.97	41,959	0	0
	세외수입	20,821	3.46	18,295	2,526	13.81
이 전 수 입	소 계	493,078	81.88	445,699	47,379	10.63
	지방교부세	294,877	48.97	265,537	29,340	11.05
	조정교부금등	9,878	1.64	7,501	2,377	31.69
	보조금	188,323	31.27	172,661	15,662	9.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306	7.69	7,128	39,178	549.64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7.36%인 89,084백만원이 증액된 602,166백만원임.
- 정책사업비 79,567백만원, 재무활동 9,17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4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02,166	100	513,082	89,084	17.36
정 책 사 업	476,724	79.17	397,156	79,567	20.03
재 무 활 동	50,087	8.32	40,912	9,175	22.43
행정운영경비	75,354	12.51	75,014	340	0.45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3,607백만원이 증액된 40,827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3,220백만원이 증액된 37,528백만원
- 교육분야는 654백만원이 증액된 8,158백만원
- 문화및관광분야는 8,388백만원이 증액된 46,033백만원
- 환경분야는 9,890백만원이 증액된 59,152백만원
- 사회복지분야는 5,955백만원이 증액된 112,786백만원
- 보건분야는 1,503백만원이 증액된 10,468백만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174백만원이 증액된 116,719백만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6,026백만원이 증액된 11,288백만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16,434백만원이 증액된 30,776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4,887백만원이 증액된 44,492백만원
-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8,580,300백만원
- 기타분야는 340백만원이 증액된 75,354백만원이 편성됨.

【기능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02,166	100	513,082	89,084	17.36
일반공공행정	40,827	6.78	37,220	3,607	9.69
공공질서및안전	37,528	6.23	34,308	3,220	9.39
교육	8,158	1.35	7,503	654	8.72
문화및관광	46,033	7.64	37,644	8,388	22.28
환경	59,152	9.82	49,261	9,890	20.08
사회복지	112,786	18.73	106,831	5,955	5.57
보건	10,468	1.74	8,964	1,503	16.77
농림해양수산	116,719	19.38	98,545	18,174	18.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288	1.87	5,261	6,026	114.53
교통및물류	30,776	5.11	14,341	16,434	114.59
국토및지역개발	44,492	7.39	29,605	14,887	50.29
예비비	8,580,300	1.42	8,580,300	0	0.00
기타	75,354	12.51	75,014	340	0.45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건설과 82,889백만원(13.77%)
- 가족복지과 81,529백만원(13.54%)
- 농업기술센터 80,885백만원(13.43%)
- 행정과 79,454백만원(13.19%)순으로 편성됨.

【조직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02,166	100	513,082	89,084	17.36
본 청	486,236	80.75	416,194	70,041	16.83
기 획 실	19,272	3.20	18,475	797	4.32
정 책 담 당 관	320	0.05	369	△48	△13.21
행 정 지 원 국	224,880	37.35	211,551	13,329	6.30
행 정 과	79,454	13.19	77,817	1,637	2.10
올림픽체육과	19,157	3.18	14,543	4,614	31.73
복지정책과	22,527	3.74	22,084	443	2.01
가족복지과	81,529	13.54	77,256	4,272	5.53
민원토지과	4,952	0.82	3,276	1,676	51.17
세 정 과	881	0.15	742	138	18.65
회 계 과	5,984	0.99	5,868	116	1.98
인재육성과	10,392	1.73	9,962	430	4.32
경 제 건 설 국	241,763	40.15	185,798	55,964	30.12
관광문화과	27,818	4.62	23,774	4,044	17.01
허 가 과	7,568	1.26	7,563	5	0.07
경 제 과	21,338	3.54	13,589	7,748	57.02
환 경 과	47,142	7.83	42,569	4,573	10.74
산 림 과	28,980	4.81	27,167	1,812	6.67
안전교통과	11,472	1.91	8,749	2,723	31.13
건 설 과	82,889	13.77	54,470	28,418	52.17
도 시 과	14,532	2.41	7,914	6,618	83.62
현안사업추진과	20	0.00	0	20	순증
직 속 기 관	93,241	15.48	79,893	13,347	16.71
보 건 의 료 원	12,356	2.05	10,902	1,453	13.33
농업기술센터	80,885	13.43	68,990	11,894	17.24
의 회 사 무 과	1,017	0.17	946	71	7.57
상하수도사업소	15,967	2.65	10,646	5,321	49.99
읍 면	5,702	0.95	5,401	300	5.57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358백만원이 증액된 70,977백만원
- 물건비는 3,813백만원이 증액된 35,471백만원
- 경상이전비는 9,946백만원이 증액된 209,920백만원
- 자본지출은 64,790백만원이 증액된 226,666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2,315백만원
- 내부거래는 7,491백만원이 증액된 43,852백만원
- 예비비및기타는 1,682백만원이 증액된 12,962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성질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회추경예산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02,166	100	513,082	89,084	17.36
인 건 비	70,977	11.79	69,618	1,358	1.95
물 건 비	35,471	5.89	31,657	3,813	12.05
경 상 이 전	209,920	34.86	199,973	9,946	4.97
자 본 지 출	226,666	37.64	161,875	64,790	40.02
용자및출자	0	0.00	0	0	0.00
보 전 재 원	2,315	0.38	2,315	0	0.00
내 부 거 래	43,852	7.28	36,361	7,491	20.60
예비비및기타	12,962	2.15	11,280	1,682	14.91

3. 특별회계

- 202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00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62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5,38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81,62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특별회계		107,004	100	96,242	10,762	11.18
	공기업특별회계	25,381	23.72	19,777	5,604	28.3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381	23.72	19,777	5,604	28.34
	기타특별회계	81,623	76.28	76,464	5,158	6.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5	0.52	544	10	2.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41	0.13	141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1,192	1.11	1,003	188	18.77
	수질개선특별회계	79,733	74.51	74,775	4,958	6.63

IV.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17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84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602,16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84백만원(17.36%) 증액되고
- 특별회계는 107,00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62백만원(11.18%)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9,084백만원이
증액된 602,166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26백만원이 증액된 20,821백만원으로
이자수입 2,000백만원, 보조금반환수입 500백만원,
기타수입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9,340백만원이 증액된 294,877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2,724백만원, 특별교부세 2,400백만원,
부동산교부세 3,616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377백만원이 증액된 9,878백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577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8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662백만원이 증액된 188,32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72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4,937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18백만원, 기금 1,14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9,084백만원이 증액된 602,166백만원임.
 -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79,567백만원이 증액된 476,724백만원
 - 재무활동은 9,175백만원이 증액된 50,087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340백만원이 증액된 75,35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 농림해양수산 116,719백만원(19.38%)
 - 사회복지 112,786백만원(18.73%)
 - 문화및관광 46,033백만원(7.64%)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 건설과 82,889백만원(13.77%)
 - 가족복지과 81,529백만원(13.54%)
 - 농업기술센터 80,885백만원(13.43%) 순으로 편성됨.
 - 기정액 대비
 - 도시과 83.62%(재산 중로 3-2호 개설공사 1,000백만원 등)
 - 경제과 57.02%(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477백만원 등)
 - 건설과 52.17%(횡계2리 인도설치공사 1,600백만원 등)순으로 증액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자본지출 226,666백만원(37.64%)
 - 경상이전 209,920백만원(34.86%)
 - 인건비 70,977백만원(11.79%)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00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6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604백만원이 증액된 25,38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백만원이 증액된 55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약금 등 편성에 따른 것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8백만원이 증액된 1,19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비비 편성에 따른 것임.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58백만원이 증액된 79,733백만원이며,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증액 등에 따른 것임.

5. 계속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40개 사업으로,

- ▶ 총사업비는 661,808백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9,02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9,670백만원,
 -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8,000백만원,
 -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846백만원,
 -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900백만원 등
 4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0 개사업	557,784	661,808	59,024	302,323	121,777	192,708
1	평화 테마파크 조성	35,750	35,750	0	35,750	0	0
2	대화 축구장 조성	3,960	3,960	0	0	1,980	1,980
3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0	9,670	9,670	0	400	9,270
4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2단계	2,650	2,650	0	1,821	829	0
5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	3,000	3,000	0	500	1,430	1,070
6	평창 수학아카데미 조성사업	8,250	8,250	0	6,249	0	1,999
7	평창 에코랜드 조성	8,700	9,000	300	8,700	300	0
8	행복+학습센터 조성	17,600	17,600	0	8,990	0	8,610
9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3,100	23,100	0	3,920	5,284	13,896
10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 우스 조성	0	8,000	8,000	0	600	7,400
11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4,200	24,200	0	12,949	0	11,250
12	비점오염저감사업(횡계천)	6,154	6,154	0	6,154	0	0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13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	10,700	11,000	300	9,700	1,300	0
14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11,627	11,627	0	11,627	0	0
15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0,619	20,619	0	4,356	16,194	69
16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25	28,125	0	4,165	20,772	3,187
17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3,614	13,614	0	2,013	3,235	8,366
18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9,792	19,792	0	1,694	14,620	3,478
19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6,904	6,904	0	1,086	1,713	4,105
20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	6,455	14,363	7,908	795	1,648	11,920
21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	6,001	6,001	0	803	443	4,755
22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 업	3,373	3,373	0	0	158	3,215
23	평창 치유의 숲 조성	5,400	5,500	100	3,900	1,600	0
24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500	5,500	0	4,100	1,400	0
25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750	8,750	0	5,650	3,100	0
26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15,000	15,000	0	5,500	1,875	7,625
27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10,100	10,100	0	6,500	3,600	0
28	홍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25,594	25,594	0	25,594	0	0
29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0	28,846	28,846	0	1,800	27,046
30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0	3,900	3,900	0	200	3,700
31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100	27,100	0	16,318	3,724	7,058
32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31,261	31,261	0	9,214	8,319	13,727
33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9,929	9,929	0	8,273	1,656	0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34	후명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	20,745	20,745	0	5,873	4,636	10,235
35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5,000	35,000	0	14,680	9,200	11,120
36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00	5,200	0	252	3,463	1,484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9,100	39,100	0	31,000	0	8,100
38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12,920	12,920	0	3,680	1,200	8,040
39	용평·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6,675	26,675	0	26,675	0	0
40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18,936	18,936	0	13,840	5,096	0

6.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을 보면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709,171백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40,788백만원, 조정교부금 3,934백만원, 보조금 28,97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00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083백만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5,76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32% 감소한 10.43%, 재정자주도는 △3.92% 감소한 61.04%이며, 향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 전망이 어두운 반면, 의무지출과 복지 수요 확대에 의한 세출예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세원의 발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 사용료 요금 현실화 등 다방면에 걸친 자체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현황 】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자립도	10.38	10.44	8.88	10.19	10.43
재정자주도	60.25	62.23	70.47	60.85	61.04

※ 2020~2023 최종예산, 2024년 1회 추경 기준

○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46,178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정대비 **39,178백만원 (549.6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順)잉여금으로,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6,112백만원**으로 초과세입금 **41,189백만원**, 집행잔액 **24,922백만원** 발생에 따른 것이며, 2024년 본예산에 7,000백만원을 사전 편성하여 경제활성화, 사회복지 등의 재원으로 집행하였고 금회 추경에서는 잔액 59,112백만원 중 39,178백만원을 편성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세출 자원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대비 21,97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방교부세의 초과세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각각 3,074백만원, 7,082백만원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62.3%)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체납액 징수 등 다양한 자원 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과소추계한 결과로 판단되며 세입 대비 예산현액 오차가 지난해 결산(2022회계연도)시 100.4%에서 올해(2023년 회계연도) 104.5%로 커졌으므로 보다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결산액	25,767	23,906	29,738	44,139	66,113
당초예산액(선반영 예산)(A)	9,000	9,000	9,000	7,000	7,000
선반영 비율	34.93%	37.65%	30.26%	15.86%	10.59%
최종예산액(B)	25,767	23,891	29,737	31,083	46,184
증감액(C=B-A)	16,767	14,891	20,737	24,083	39,184
증가율(C/A)	186.30%	165.46%	230.41%	344.04%	559.77%

※ 2024년 최종예산액은 제1회 추경안 기준

□ 세출예산안을 보면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99,846백만원으로

- 금회 편성된 300백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64개사업에 58,610백만원이며,
-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300백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1개사업에 33,488백만원입니다.
-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365,187백만원으로 당초예산(333,973백만원) 대비 31,21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14,187백만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현황 : 예산안 설명자료 P17)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고 대규모 공모사업 및 정부주도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는 추세이므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출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12개사업 1,981백만원의 성립전 편성분이 1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8개사업 9,785백만원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건당 취득 기준가격 10억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1건”이란 다년도에 걸쳐 취득하더라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인 경우,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건물 신축의 경우 기

준가격을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부대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기본이 되는 건축물 따위에 덧붙여 있는 시설. ex) 이 건물은 휴식 공간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로 정의되어 있고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는 “시설(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수 시설. 울타리, 옹벽, 포장도로, 배수로, 맨홀, 정화조, 대문, 물탱크 등의 설비 시설 외 일체의 공작물” 로 정의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료 참조)에는 주차장, 부지 내 도로, 방범시설, 조경시설, 옹벽, 각종 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에서 편성한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제설창고 및 휴게실, 배수로, 펜스설치 등 총 사업비 1,3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해 1회추경 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업으로 건물신축의 경우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 사업비 기준 10억 이상이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며 2023년 8월 사전 관련법 검토시 회계과에서 10억이상이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함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을 회신하였으나 건축비가 10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토지 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천만원 초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나 해당 절차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의 의미를 질의한 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회신을 보면, 건물 신축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는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모두 기준가격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재정공제회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건축비 이외의 아스콘 포장, 배수로,

펜스 등 모든 시설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1,350백만원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회신(구두)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상 건물 신축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기준가격 및 건축비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편성요청된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먼저 의결 받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질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은 점, 제설창고와 기타 펜스, 배수로, 도로포장이 창고의 부대시설로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므로 “1건”으로 판단되는 바, 법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편성 요청된 사업비 1,350백만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토지 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제 목 :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가격

민원내용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취득, 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기준금액은 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이고, 기준금액 결정방법은 토지, 건물이 아닌

그 외 재산인 시설물의 설치인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예를 들어, 내년도 총사업비(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총합이 10억원일 경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10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와 같이 본 공사와 별도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

□ 처리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하며,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는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드는 사업비 모두를 포함

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사업비에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해당 비용 모두를 기준가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실의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예산안 p147)은 공모사업 등 긴급한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용역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0백만원을 증액한 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¹⁾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공통예산(풀예산)으로 편성한 후 수요 발생시마다 집행하는 예산은 용역 시행 전 용역과제심의를 받고 있으나,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계획성없는 용역은 실효성 낮은 용역결과물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주요 현안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을 소규모 용역비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2022년 실시한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용역비 50백만원)과 같이 별도로 사업부서에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용역까지 공통예산을 사용)

따라서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 또는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소규모 시책추진 용역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규모 시책추진 용역	135	300	300	40	100

※ 2024년 최종예산액은 제1회 추경안 기준

○ 금회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 잔액 반환금은 총 1,682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합 계	1,682	0	1,682	
국고보조금반환금	1,041	0	1,041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41	0	641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2건	483	
가 족 복 지 과	기초연금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312	p196
농 산 물 유통 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고보조	171	p265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²⁾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³⁾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4,967백만원(6.67%)이 증액된 79,45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현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기정액 대비 3,803백만원이 증가한 26,267백만원이 편성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은 평창FC 운영지원 200백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98백만원,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200백만원,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250백만원 등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번 지원되면 중단이 어렵고 매년 증액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또는 증액 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기준과 정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민간이전 경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민간이전 (307)	59,398	60,806	64,945	65,557	79,452

※ 2020~2023 최종예산, 2024년 1회 추경 기준

【 민간이전 경비 편성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회추경예산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1 회 추 경	602,166	100	513,082	89,084	17.36
합 계	79,452	13.19	74,485	4,967	6.67
의 료 및 회 복 비	2,478	0.41	2,218	259	11.7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26,267	4.36	22,464	3,803	16.93
민 간 단 체 법정운영비보조	2,602	0.43	2,509	93	3.71
민 간 행 사 보 조	2,433	0.40	1,949	483	24.82
민간위탁금	10,143	1.68	10,192	△49	△0.48
보 험 금	1,320	0.22	1,318	1	0.12
연금지급금	130	0.02	130	0	0.00
이차보전금	276	0.05	266	10	3.75
운수업계 보조금	2,785	0.46	2,534	251	9.9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0,382	1.72	10,255	127	1.24
사회복지사업 보조	20,599	3.42	20,613	△13	△0.07
민간인위탁 교육비	32	0.01	32	0	0.00

- 이번 추경은 변경 교부된 국비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본예산 일부 반영사업과 현안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인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면서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복지, 농업 분야에도 균형감있게 편성하여 군민이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따라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제1회 추경 주요 편성현황

1. [표1] 3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13개부서 / 64개사업	148,223	P31

2.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내역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8개부서 / 8개사업	9,785	P34

3. [표3] 연구개발비(207-01, 207-02)편성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6개부서 / 8개사업	287	P35

4. [표4] 행사(축제)성 예산(201-03, 307-04) 편성현황(신규·증액)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10개부서 / 41개사업	1,882.3	P36

5. [표5] 민간위탁사업(307-05,402-03) 편성현황(신규·증액)

구 분(예 산 액(백만원)	비고
5개부서 / 7개사업	1,361	P38

6. [표6] 출연금 편성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3개부서 / 4개사업	1,602	P38

7. [표7]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4개부서 / 12개사업	1,981	P39

※ [표1] 주요사업 현황(30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재원	비고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합 계	64개 사업	148,223	13,656	58,610		
올림픽체육과(3)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 홍보비	650	0	650	자체	P165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400	0	400	기금	P170
	대관령초 체육관 신축	499	0	499	자체	P170
가족복지과(3)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	2,405	500	1,905	자체	P186
	경로당BF 반영 개보수	400	0	400	자체	P187
	부모급여 보육료 위탁비	300	0	300	국도비	P193
민원토지과(2)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2단계)	829	429	400	자체	P202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3단계)	1,430	400	4,030	자체	P202
관광문화과 (3)	평창에코랜드 조성	300	0	300	도비보조	P226
	방림 샘물터 복원사업	300	0	300	자체	P228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조성	300	0	300	자체	P228
경제과(5)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79855	0	798	균형발전	P243
	대관령면 도시가스 보급사업	2,971	0	2,971	자체	P24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477	0	1,477	기금	P246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방하우스 조성	600	0	600	지방소멸	P247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	1,850	1,155	695	자체	P247
환경과(3)	도로 청소차 구입	350	0	350	국비보조	P258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 설치	1,050	750	400	자체	P259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1,064	452	612	국비보조	P260
산림과(1)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1,875	0	1,875	도비보조	P267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재원	비고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안전교통과(1)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2,208	0	2,208	자체	P276
건설과(28)	군도4호선(대미동길) 확.포장사업	900	400	500	자체	P281
	시특법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090	640	450	자체	P281
	군도유지보수 사업	800	300	500	자체	P281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	1,350	0	1,350	자체	P281
	황계2리 인도설치 공사	1,600	0	1,600	자체	P281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장비 구입	560	0	560	자체	P281
	군도1호선(약수리) 재해복구사업	800	0	800	특별교부	P281
	군도8호선(장평) 도로 확.포장사업	600	0	600	자체	P282
	평창205호선(응암) 확.포장사업	430	0	430	자체	P282
	미찬205호선(다래너미길) 확.포장사업	500	0	500	자체	P282
	방림203호선(방의동) 확.포장사업	300	0	300	자체	P282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800	400	400	자체	P282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 (대관령208호선)개설공사	1,300	0	1,300	특별교부	P283
	소교량 가설사업	2,000	1,200	800	자체	P283
	하일리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680	0	680	자체	P283
	고길리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760	0	760	자체	P283
	노동리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520	0	520	자체	P283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1,600	800	800	자체	P283
	하천, 소하천 우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600	300	300	자체	P283
	지방하천(속사천) 유지보수 사업	450	0	450	자체	P284
세천(오대정) 유지보수 사업	650	0	650	자체	P284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재원	비고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건설과	도배수로 정비사업(8개읍면)	3,000	1,200	1,800	자체	P285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	2,500	800	1,700	도비보조	P285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8개읍면)	1,600	600	1,000	도비보조	P285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3,028	0	3,028	균특	P285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24	1,680	2,044	균특	P286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00	1,260	540	균특	P286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580	240	340	도비보조	P287
도시과(9)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환경개선사업	530	150	380	자체	P292
	평창 중로1-3호 재해취약지 개선공사	400	0	400	자체	P292
	장평리 가스폭발사고 배수시설 복구공사	550	0	550	자체	P292
	평창 삼성연합의원 앞 주차장 조성	800	0	800	자체	P292
	장평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	300	0	300	자체	P292
	재산 중로3-2호 개설공사	1,000	0	1000	자체	P292
	오대천 인도교 경관조명 사업	300	0	300	특별교부	P292
	용전리 경관조명 설치	300	0	300	자체	P294
	진료업무대행의사 관사 전세금	750	0	750	자체	P313
농산물유통과(3)	시선 편의식품(채소류) 가공시설 구축	720	0	720	도비보조	P327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위탁비	3,247	0	3,247	국도비	P330
	비료 가격안정 지원	891	0	891	국도비	P332
축산농기계과(2)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	2,050	0	2,050	국도비	P339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450	0	450	국도비	P339
상하수도사업소 (1)	(신)대관령정수장 관리도 확장 및 시스템 개량공사	300	0	300	자체	P349

※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예산서P)
계	8개 사업	9,785	
올림픽체육과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400	P170
경제과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600	P247
산림과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1,875	P267
안전교통과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2,208	P276
건설과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	1,350	P281
도시과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285	P293
농정과	대화리 대체주차장 조성	1,017	P322
축산농기계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	2,050	P339

- 의결(또는 심의) 내역

사업명	공유재산 의결시기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제출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제출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토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건물)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	대상이나 행정절차 누락함.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⁴⁾	대상아님.
대화리 대체주차장 조성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제출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제출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표3] 연구개발비(207-01, 207-02)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8개 사업	287	152	135	
기획실 (1)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	100	30	70	P147
정책담당관 (1)	2025년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0	50	△50	P151
인재육성과 (1)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⁵⁾ (국비)	14	0	14	P218
관광문화과 (2)	평창관광문화재단 전산 프로그램 구축	55	0	55	P225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용역	40	50	△10	P234
환경과 (2)	창리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	41	22	19	P257
	평창군 음식물류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15	0	15	P259
농산물유통과 (1)	이목정 공판장 활용방안 수립 용역	22	0	22	P328

- 5)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적용범위) 따른 심의 제외 대상임.
-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종합기술용역
 -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표4] 행사축제성(201-03, 307-04)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41개 사업	1,882.3	771.7	1,057.6	
행정과 (6)	평창읍 물놀이 여름프로그램 운영	20	0	20	P157(자체)
	강원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3	0	3	P157(자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40	28	12	P158(자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20	14	6	P158(도비)
	통일준비 역량함양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	10	6	4	P158(자체)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15	0	15	P159(자체)
올림픽체육과 (10)	2018 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	27	0	27	P165(자체)
	한국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지원	10	1	10	P167(자체)
	읍면 체육대회 지원	144	120	24	P168(자체)
	군수배 종목별 대회지원	71	60	11	P168(자체)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	25.4	0	25.4	P168(자체)
	오대산천 전국 줌바댄스 대회지원	30	0	30	P168(자체)
	HAPPY700평창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지원	50	0	50	P168(도비)
	HAPPY700평창 전국 오픈 플라이낚시대회 지원	20	0	20	P169(도비)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	3.5	0	3.5	P169(도비)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	180	100	80	P169(자체)
복지정책과 (3)	현충일 행사운영비	9	7	2	P175(자체)
	6.25전쟁 기념 행사운영비	3	5	-2	P175(자체)
	생활민원서비스 지원단 발대식	5	0	5	P181(자체)
가족복지과 (2)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	60	0	60	P192(도비)
	드림스타트사업 행사비	17	12	5	P194(균형)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인재육성과 (5)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68	38	30	P215(자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비	35.1	35	0.1	P215(기금)
	평생학습축제 개최	40	30	10	P217(자체)
	성인문해교육 행사비	20	0	20	P217(국비)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7.8	0	7.8	P218(자체)
관광문화과 (7)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16	00	16	P225(자체)
	2018 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문화행사	50	0	50	P230(자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비	8	0	8	P230(자체)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치유음악회 운영	0	20	-20	P231(도비)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행사비	333	0	333	P231(자체)
	제3회 차강 박기정 작품 전시회 개최	40	0	40	P231(자체)
	노산문화제 지원	270	250	20	P232(자체)
경제과 (4)	진부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	50	0	50	P244(도비)
	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	20	0	20	P249(자체)
	청년의 날 행사 운영	10	0	10	P249(자체)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12.7	0	12.7	P250(도비)
환경과(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65.8	45.7	20.1	P256(자체)
안전교통과 (2)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3	0	3	P273(자체)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10	0	10	P276(자체)
농정과(1)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60	0	6	P321(자체)

※ [표5] 민간위탁(307-05,402-03)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7개 사업	1,361	1,410.2	-49.3	
올림픽체육과 (1)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금	130	180	-50	P165(자체)
복지정책과 (1)	자산형성 지원사업	0	119.4	-119.4	P180(국비)
가족복지과 (2)	중부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67.4	70	97.4	P251(자체)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14.5	113	1.5	P251(자체)
환경과 (1)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319.5	300	19.5	P257(자체)
안전교통과 (2)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541	542	-1	P276(기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88.6	85.8	2.7	P276(국비)

※ [표6] 출연금(306-01)예산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4개 사업	1,602	1,252	350	
올림픽체육과 (2)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	1,342	1,252	90	P165(자체)
	2024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 개최 출연금	100		100	P166(자체)
관광문화과 (1)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금	100	0	100	P225(자체)
경제과 (1)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출연금	60	0	60	P247(자체)

※ [표7]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계	12개 사업	1,981	
올림픽체육과 (1)	한국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10	2차(도비)
산림과 (1)	산불대책비	40	4차(도비)
건설과 (7)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90	3차(도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00	3차(도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10	3차(도비)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200	5차(국비)
	하천관리 역량강화	50	5차(도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0	5차(도비)
	군도1호선(약수리) 재해복구사업	800	5차(특교)
도시과 (3)	오대천 인도교 경관조명 사업	300	1차(특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형)	171	6차(국비)
		17	6차(도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	7차(국비)

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